

제 호

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(정정, 말소) 통지서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
년 월 일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(정정, 말소)했음을 통지합니다.

당사자	공동농업 경영체명		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	
처분결과 및 사유				

※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이 통
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담당자: 문의전화:)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